

제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단615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희

변 론 종 결 2021. 3. 11.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2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그 중 42,830,032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차71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20.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① 8,659,220원과 그중 6,805,213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② 39,155,688원과 그중 36,024,819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6. 8. 확정되었다.

나. ① 채권은 원고가 C에게 2014. 10. 8. 대여한 50,000,000원에 대한 미변제원리금이고, ② 채권은 2015. 2. 10. C이 원고에게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미변제 원리금이다.

다. C은 2016. 8. 18.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라. 증여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90,000,000원(=390,000,000원 × 1/2)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피고의 1/2 지분 전체에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근저당권자 D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6. 12. 원고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6. 12.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을 9호증)에 따르면, 대부분이 이 사건 증여 이후에 취득한 것이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거나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들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배우자인 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이후 D조합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한다.

공유부동산 지분들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 되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259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7,500,000원[= 190,000,000원 - 162,500,000원(=325,000,000원 × 1/2)]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판사 조병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7층 호 84.647㎡

대지권의 표시

토지회 표시 :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 33824㎡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 144.9㎡

대지권의 종류 : 1,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3968.9분의 62.8595

(위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 끝.